



기러기 아빠의 세금신고(1)

-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 판정

질문

E씨는 한국에서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인 2011년 12월부터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캐나다에서 살았습니다. 캐나다에 도착하고 몇 개월이 지난 2012년 9월부터 캐나다 대학에서 공부하였으며 2014년 12월에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2015년 3월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일하기 전까지는 한국에 있는 자금을 송금받아 생활했으며 그동안 한국에 금융자산을 \$100,000 이상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소득이 없었고 유학생 신분이었던 E씨는 캐나다에서 세금신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주권을 얻고 근로소득이 생기면서 세금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E씨는 앞으로 성실하게 세금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그동안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잘못된 것인지 불안해졌습니다. E씨는 언제부터 세금신고를 해야 할까요?

검토

신분에 따라 세금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미국과 달리 캐나다는 거주(Residency) 여부에 따라 개인의 세금신고 의무를 결정합니다. 한국도 이러한 거주자 개념을 도입하여 운

용하고 있으므로 한국과 캐나다의 세금신고 의무 결정 방식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세금신고의 의무가 있는데 거주자 여부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발간한 지침서(S5-F1-C1: Determining an Individual's Residence Status)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본 지침서에서는 개인의 세금신고 의무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방대하고 일부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습니다. 동 지침서에 의하면 한 개인이 그의 삶을 정기적, 일상적으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데(one is "ordinarily resident" in the place where in the settled routine of his life he regularly, normally or customarily lives), 캐나다에서의 거주관계, 거주기간, 목적, 지속성 등 관련되는 모든 항목을 고려하여 거주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All of the relevant facts in each case must be considered, including residential ties with Canada and length of time, object, intention and continuity with respect to stays in Canada and abroad.)

이러한 내용에 따르면 방문이나 일시적인 체류가 아닌 일상적인 생활을 목적으로 캐나다에 살고 있는 개인은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유학생 등의 신분과 관계없이 캐나다에 주택, 가족이 있고 사회, 경제적 생활을 하고 있으면 거주자로 판정되므로 캐나다에 살기 시작한 시점부터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캐나다 거주자에 해당하면 캐나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소득(World income)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캐나다에 소득이 없더라도 해외에 소득이 많고 캐나다 세율이 외국보다 높으면 캐나다에서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와 별도로 해외에 \$100,000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캐나다 거주자는 해외자산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해외자산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과도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한편, 캐나다 거주자는 캐나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개인은 캐나다 거주자로 판정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

일반적인 조세 목적상 E씨가 캐나다에서 살기 시작한 시점(2011년 12월), 영주권을 취득한 시점(2014년 12월), 캐나다에서 일하기 시작한 시점(2015년 3월)이 E씨에게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E씨 개인적으로는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일하기 시작한 시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시점부터 세금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자의적인 것으로 캐나다 세법에 따르면 E씨는 영주권 취득 또는 소득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캐나다에 도착하여 살기 시작한 2011년 12월부터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E씨는 이 시점부터 가족과 함께 캐나다에서 정기적, 일상적으로 살기 시작했으므로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E씨는 그동안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 세금신고를 한꺼번에 해야 하고 한국 금융자산에 대해서 해외자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세금신고나 해외자산신고를 늦게 함에 따라 내야 하는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진신고제도 (Voluntary disclosure program)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E씨는 캐나다 거주자로서 CCB(Canada child benefit)나 GST/HST credit 등의 사회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과거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서 내야 할 세금보다 그동안 신청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사회보장혜택 금액이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